

	입학차별금지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8. 5. 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입학에 위한 제반 영역에 대해 성별, 종교, 민족, 나이, 장애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설관리) 지원자가 입학 상담 및 면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조(상담) 지원자를 상담하는 교직원은 전형에 대한 안내 및 전공에 대한 설명 시 상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,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안내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전형관리) ①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 성적반영에 있어서 교과성적이 산정되지 않거나 성적특이자의 경우 입학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,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.

② 면접과정에서 인지된 지원자의 성별, 종교, 민족, 나이, 장애 등을 면접점수에 차별하여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공정관리) ① 입학부정방지, 수험생 심사, 입학전형의 심사과정 등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.

② 지원자가 입학차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기된 사항에 대해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한 상위의 법,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